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○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통지(안내)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공고대상

| 연번 | 성명 | 생년월일 | 주소 | 발급기간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송** | 2006. 04. 12. | 기흥구 용구대로 1842, ** | 2023. 05. 30.~ 2023. 06. 20. | 폐문부재 |
| 2 | 유** | 2006. 04. 25. | 기흥구 용구대로 1842, ** | 2023. 05. 30.~ 2023. 06. 20. | 폐문부재 |
| 3 | 최** | 2006. 04. 19. | 기흥구 한보라2로 51, ** | 2023. 05. 30.~ 2023. 06. 20. | 폐문부재 |

2. 공고기간 : 2023.05.30. ~ 2023.06.20. (21일간)

3. 본인 확인(다음 중 하나)

- 신분증명서 (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)
-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 또는 모, 그 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대동

4. 준비물
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.5cm, 세로 4.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

5. 유의사항

○ 위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최고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※ 공고 기간 경과 후에는 『행정절차법』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, 자세한 사항은 전화(031-324-639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5. 30.

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장

